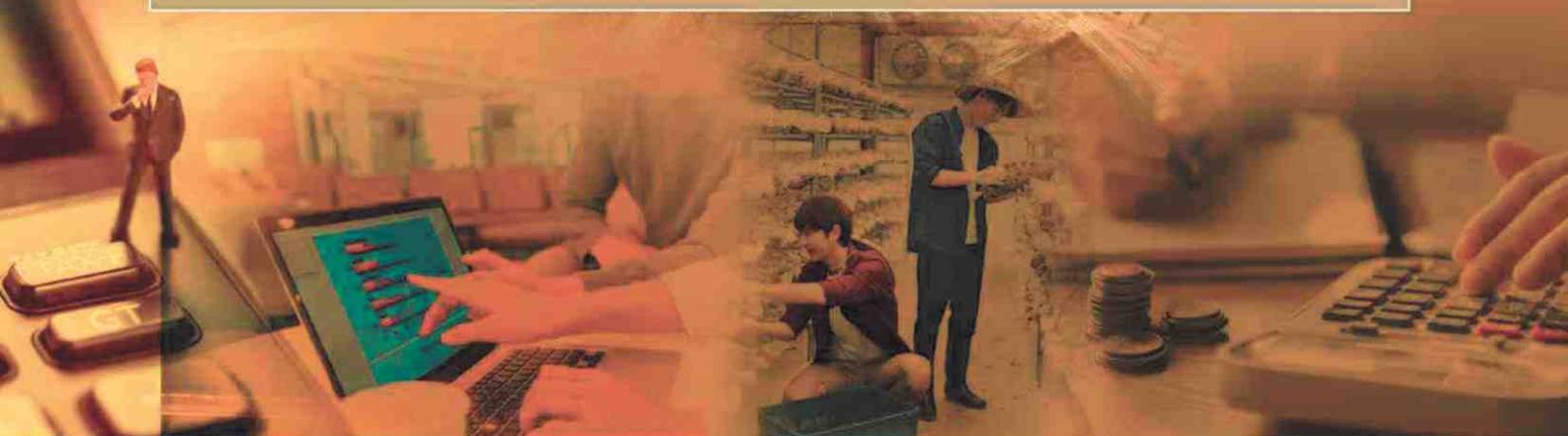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정책연구 2023-03

#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조경엽·유진성



정책연구 23-03

2023. 11

#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조경업·유진성



본 보고서에 실린 내용은 집필자 개인의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합니다.

## **조경엽**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미국 University of Texas at Austi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재정학, 거시경제, 자원·환경 경제학 등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예산정책처에 재직하였으며 현재 한국경제연구원에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 및 논문으로는 「남풍단가연동제의 경제적 영향」(2023), 「대한민국 위대한 리셋: 차기정부의 정책과제」(연구책임, 2022), 「국가채무의 국제비교와 적정수준」(2020), 「포스트 코로나, 경제·사회변화에 대한 전망과 시사점」(연구책임, 2020), 「주요 경제위기와 현재 위기의 차이점과 향후 전망」(연구책임, 2020), 「한일 무역분쟁이 양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2019), “국제간 법인세율 격차에 따른 다국적 기업의 소득이전효과”(경제학연구, 2018) 등이 있다.

## **유진성**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서강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워싱턴대학교(University of Washington)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으로 재직 중이며, 주요 연구 분야는 노동경제, 응용미시, 인구문제 등이다. 주요 저서로는 『인구구조 변화가 GDP에 미치는 영향 추정 및 시사점』(2023), 『주52시간 근무제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2023),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실업률에 미치는 영향 분석』(2022), 『종사자 특성에 따른 혼인율 및 출산율 비교분석』(2022), 『코로나19가 2020년 취약계층 직장유지율에 미친 영향』(2022), 『소득분위별 출산율 변화 분석과 정책적 함의』(2022), 『중·고령층 재취업의 특징 및 요인 분석과 시사점』(2022), 『기혼 여성의 경제활동 변화 분석과 시사점』(2021), 『산업별 청년층 취업자 추이 분석과 시사점』(2021) 등이 있다.

## 최저임금의 쟁점과 경제적 영향

1판1쇄 인쇄 | 2023년 11월 20일

1판1쇄 발행 | 2023년 11월 23일

발행처 |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 김병준

편집인 | 김병준

등록번호 | 제318-1982-000003호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www.keri.org](http://www.keri.org)

© 한국경제연구원, 2023

ISBN 978-89-8031-827-7

5,000원

## CONTENTS

본  
문  
목  
차

|                     |    |
|---------------------|----|
| 요 약                 | 5  |
| I. 서론               | 12 |
| II. 최저임금의 쟁점        | 14 |
| III. 분석모형           | 18 |
| 1. 개요               | 18 |
| 2. 분석 시나리오          | 24 |
| IV. 분석결과            | 36 |
| 1. GDP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 36 |
| 2. 소득분배 변화          | 38 |
| V. 결론 및 시사점         | 41 |
| 참고문헌                | 44 |
| 〈부록 1〉              | 45 |
| 〈부록 2〉              | 49 |

## CONTENTS

### 표 목 차

|   |    |
|---|----|
| 〈표 1〉 분석대상 산업 및 소득계층                        | 20 |
| 〈표 2〉 계층별·업종별 근로자 수                         | 22 |
| 〈표 3〉 계층별·업종별 근로자 분포                        | 23 |
| 〈표 4〉 시나리오 구성                               | 24 |
| 〈표 5〉 최저임금 9,620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부터의 인상률     | 25 |
| 〈표 6〉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 26 |
| 〈표 7〉 SCN1-1의 최저임금 인상률                      | 28 |
| 〈표 8〉 SCN1-2의 최저임금 인상률                      | 29 |
| 〈표 9〉 SCN1-3의 최저임금 인상률                      | 30 |
| 〈표 10〉 SCN1-4의 최저임금 인상률                     | 31 |
| 〈표 11〉 SCN2-1의 최저임금 인상률                     | 32 |
| 〈표 12〉 SCN2-2의 최저임금 인상률                     | 33 |
| 〈표 13〉 SCN2-3의 최저임금 인상률                     | 34 |
| 〈표 14〉 SCN2-4의 최저임금 인상률                     | 35 |
| 〈표 15〉 시나리오별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 37 |
| 〈표 16〉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39 |
| 〈표 17〉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 39 |
| 〈표 18〉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조원)                    | 40 |
| 〈부표 1-1〉 최저임금 9,620원에 대한 미만율(SCN1-1)        | 45 |
| 〈부표 1-2〉 최저임금 10,000원에 대한 미만율(SCN1-2)       | 46 |
| 〈부표 1-3〉 최저임금 11,000원에 대한 미만율(SCN1-3)       | 47 |
| 〈부표 1-4〉 최저임금 12,210원에 대한 미만율(SCN1-4)       | 48 |
| 〈부표 2-1〉 최저임금 9,620원 기준 업종 차등시 미만율(SCN2-1)  | 49 |
| 〈부표 2-2〉 최저임금 10,000원 기준 업종 차등시 미만율(SCN2-2) | 50 |
| 〈부표 2-3〉 최저임금 11,000원 기준 업종 차등시 미만율(SCN2-3) | 51 |
| 〈부표 2-4〉 최저임금 12,210원 기준 업종 차등시 미만율(SCN2-4) | 52 |

### 그 림 목 차

|                    |    |
|--------------------|----|
|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 12 |
|--------------------|----|



## 요약

-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은 고용이나 물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
  -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설명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경기침체, 누적된 최저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
  -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
- 업종별 차등화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최근에는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를 넘었으며 산업별로 평균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사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요컨대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인 만큼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특정 지역 및 업종을 저임금 지역 및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찍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차등화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 본 연구에서는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 유무에 따른 경제적 영향 변화를 검토함으로써 향후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최저임금제도의 인상 수준, 최저임금의 차등화 적용 등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본 연구는 업종별·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 신업구조, 고용구조, 소득계층별 고용 및 소비 행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였음
  -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회계행렬(SAM)을 구축하고 이를 2023년 SAM으로 업데이트 하였으며,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미만율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고, 모형 입력값을 위한 가구 기준 소득 계층별 소득 및 지출 평균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추정
  - 분석을 위한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부분류 기준을 따랐으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과 소득계층을 매칭하여 산업별, 소득분위별 데이터를 구성
  -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를 크게 시나리오 1(차등적용 無)와 시나리오 2(차등적용 有)로 나누고, 각 시나리오는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00원, 11,000원, 12,21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부 시나리오로 설정하였음

〈분석대상 산업 및 소득계층〉

| 산업분류 |       |  |                 | 소득계층 |           |
|------|-------|--|-----------------|------|-----------|
| 색인   | 산업대분류 | 업종명  | 산업연관표<br>소분류 기준 | 색인   | 소득분위      |
| S01  | A     | 농림어업   | 001~025         | W01  | 소득하위 10%  |
| S02  | B     | 광업   | 026~034         | W02  | 소득하위 20%  |
| S03  | C     | 제조업  | 035~273         | W03  | 소득하위 30%  |
| S04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74~281         | W04  | 소득하위 40%  |
| S05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282~286         | W05  | 소득하위 50%  |
| S06  | F     | 건설업  | 287~301         | W06  | 소득하위 60%  |
| S07  | G     | 도매 및 소매업   | 302~303         | W07  | 소득하위 70%  |
| S08  | H     | 운수 및 창고업   | 304~317         | W08  | 소득하위 80%  |
| S09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318~321         | W09  | 소득하위 90%  |
| S10  | J     | 정보통신업  | 322~334         | W10  | 소득하위 100% |
| S11  | K     | 금융 및 보험업   | 335~349         |      |           |
| S12  | L     | 부동산업   | 341~344         |      |           |
| S13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45~356         |      |           |
| S14  | N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357~359         |      |           |
| S15  | O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360~361         |      |           |
| S16  | P     | 교육서비스업   | 362~364         |      |           |
| S17  | Q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65~370         |      |           |
| S18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71~375         |      |           |
| S19  | S, T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br>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376~384         |      |           |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                 | 색인     | 내용                |
|----------------------|--------|-------------------|
| 시나리오 1<br>(업종별 차등 無) | SCN1-1 | 2023년 9,620원으로 동결 |
|                      | SCN1-2 | 10,000원으로 인상      |
|                      | SCN1-3 | 11,000원으로 인상      |
|                      | SCN1-4 | 12,210원으로 인상      |
| 시나리오 2<br>(업종별 차등 有) | SCN2-1 | 2023년 9,620원으로 동결 |
|                      | SCN2-2 | 10,000원으로 인상      |
|                      | SCN2-3 | 11,000원으로 인상      |
|                      | SCN2-4 | 12,210원으로 인상      |

□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사료됨
- 내년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준은 특정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한 후, 전체 평균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과 같거나 낮아지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
-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1.33% ↓)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6.84%p ↑)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감소

-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0.1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0.63%p↑)
-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

〈시나리오별 GDP와 소비자물가지수 변화〉

(단위: %, %p)

|                            |                     | GDP(%) | 소비자물가지수(%p) |
|----------------------------|---------------------|--------|-------------|
| 시나리오 1<br>(업종별 차등 無)       | SCN1-1<br>(9,620원)  | -0.12  | 0.63        |
|                            | SCN1-2<br>(10,000원) | -0.19  | 1.05        |
|                            | SCN1-3<br>(11,000원) | -0.49  | 2.58        |
|                            | SCN1-4<br>(12,210원) | -1.33  | 6.84        |
| 시나리오 2<br>(업종별 차등 有)       | SCN2-1<br>(9,620원)  | -0.06  | 0.24        |
|                            | SCN2-2<br>(10,000원) | -0.09  | 0.40        |
|                            | SCN2-3<br>(10,000원) | -0.23  | 0.97        |
|                            | SCN2-4<br>(12,210원) | -0.73  | 3.10        |
| 시나리오 2 -<br>시나리오 1<br>(%p) | (SCN2-1)-(SCN1-1)   | 0.06   | -0.39       |
|                            | (SCN2-2)-(SCN1-2)   | 0.10   | -0.66       |
|                            | (SCN2-3)-(SCN1-3)   | 0.26   | -1.61       |
|                            | (SCN2-4)-(SCN1-4)   | 0.60   | -3.73       |

-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수준도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

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 10분위(최상위층)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근로소득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근로소득 변화율이 -0.1%~0.0%를 기록)
- 최저임금 차등화를 같이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폭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대되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
-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크게 나타나면서 소득재분배 수준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소득재분배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

|     | 시나리오 1(업종별 차등 無) |        |        |        | 시나리오 2(업종별 차등 有) |        |        |        |
|-----|------------------|--------|--------|--------|------------------|--------|--------|--------|
|     | SCN1-1           | SCN1-2 | SCN1-3 | SCN1-4 | SCN2-1           | SCN2-2 | SCN2-3 | SCN2-4 |
| W01 | -10.7            | -12.9  | -19.9  | -27.8  | -4.8             | -7.2   | -11.7  | -18.6  |
| W02 | -6.6             | -8.8   | -14.5  | -23.6  | -2.9             | -4.3   | -7.6   | -14.9  |
| W03 | -2.9             | -4.4   | -9.6   | -20.6  | -1.2             | -1.9   | -4.7   | -12.0  |
| W04 | -1.5             | -2.6   | -6.1   | -14.9  | -0.6             | -1.1   | -2.7   | -8.4   |
| W05 | -0.8             | -1.4   | -3.7   | -9.3   | -0.3             | -0.5   | -1.5   | -4.9   |
| W06 | -0.4             | -0.7   | -2.3   | -6.6   | -0.2             | -0.3   | -0.8   | -3.1   |
| W07 | -0.1             | -0.4   | -1.8   | -4.7   | 0.0              | -0.1   | -0.6   | -2.2   |
| W08 | 0.0              | -0.1   | -0.2   | -2.1   | 0.0              | 0.0    | -0.1   | -0.6   |
| W09 | 0.0              | -0.1   | -0.1   | -0.6   | 0.0              | 0.0    | -0.1   | -0.2   |
| W10 | 0.0              | 0.0    | 0.0    | -0.1   | 0.0              | 0.0    | 0.0    | 0.0    |

□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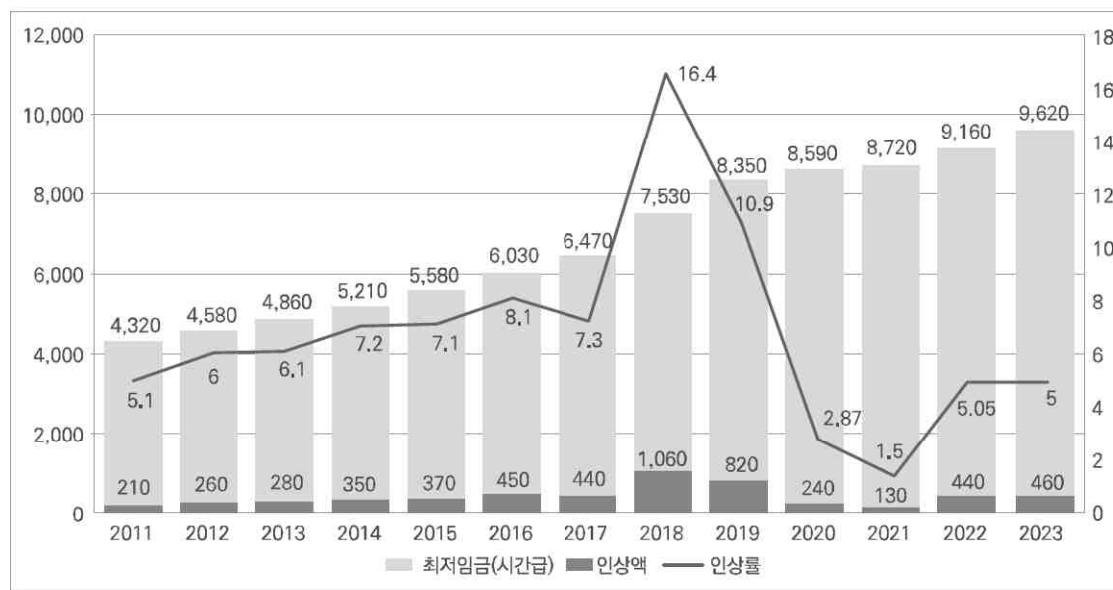
-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감소하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



## I. 서론

- 최저임금제는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정해진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제도
  - 1986년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였으며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
  -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에 따라 최저임금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였는데 그중에서도 2018년 최저임금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 대비 16.4% 증가한 7,530원을 기록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2001년 16.6% 인상 이후 17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
  - 2023년 현재 최저임금은 2022년 대비 약 5.0% 증가한 9,620원을 기록하고 있음

〈그림 1〉 연도별 최저임금 현황



자료: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

□ 보고서 작성 기준 현재, 2023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지만 법정시한을 넘길 것으로 예상

- 사용자위원, 근로자위원, 공익위원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3년 최저임금 심의가 진행 중이며 근로자위원은 2024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약 27% 인상한 12,210원을 요구한 반면 사용자위원은 올해와 같은 9,620원을 주장
- 사용자위원과 근로자위원 간의 최저임금 희망수준이 큰 격차를 나타내고 있어 합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결국 공익위원들에 의해 결정될 전망
- 올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는 업종별 차등화를 논의하였으나 일단 표결에서 업종별 차등화를 시행하기 않기로 결정한 상태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 적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저임금의 인상여부 및 인상수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수준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 또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업종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논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 II. 최저임금의 쟁점

- 최저임금은 다양한 파급경로를 거쳐 최저임금 대상자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소비자, 주주, 고임금 근로자에게도 영향을 미침
  -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계층 간 노동 대체효과, 차상위 계층의 임금 상승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이윤배분을 통한 주주로의 전가효과가 발생
-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보는 역설은 가구구성, 산업 생태계, 임금체계 등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함
  - 최저임금 대상자 중 중상위 계층의 2차 노동자의 비중이 높을 경우 최저임금의 빈곤 해소에 크게 기여하지 못함<sup>1)</sup>
  - 중상위 계층의 2차 노동자가 단순 근로자를 대체하는 구축효과가 클 경우 최저임금은 오히려 소득재분배를 악화시킴
  -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산업생태계를 가진 국가에서 최저임금인상은 저임금 근로자와 영세중소기업이 피해를 보는 부작용이 크게 나타남
  - 임금체계가 기본급이 작고 수당이 많을 경우 고임금 근로자도 최저임금 대상자가 되고 이에 따라 차상위 계층의 임금도 인상되는 임금 인플레이션이 발생함
  -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소득재분배뿐만 아니라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하여 결국 고임금 근로자의 고용도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 우리나라의 경우 2017년 6,470원이던 최저임금이 2023년 현재 9,620원으로 48.7% 상승하면서 저임금 근로자의 실업문제, 소득분배 악화, 자영업자들의 지급 능력 악화 등 다양한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음
  - 최저임금이 2018년에 16.4%, 2019년에 10.9%로 급격하게 인상되면서 당시 실업자

1) 윤희숙(2016) 참조

수가 9개월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외환위기 이후 최장기간을 기록했고, 취업자 수 증가폭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코로나19 발생 이전까지 최저를 기록한 바 있음

- 2분기 연속 최하위 20%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상위 20%의 소득은 증가하면서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소득격차가 최대로 벌어졌음
- 주휴수당, 4대 보험 등을 포함할 경우 고용주가 지불하는 금액은 법정최저임금보다 높아 지급 능력이 약한 소상공인은 고용인 없는 자영업자로 전락하거나 폐업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sup>2)</sup>

□ 최저임금 지불능력을 고려하여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  
는 최저임금의 차등화 논란도 지속

-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를 넘었으며 산업별로 평균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일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지불능력이 낮은 산업군에서는 불공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요컨대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인 만큼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30개국 가운데 차등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에 이르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나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음
- 2024년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화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요컨대 매년 불거지는 최저임금의 쟁점은 최저임금의 결정수준과 업종별 차등화의 필요성이라고 할 수 있음

- 최저임금의 결정수준은 고용이나 물가 등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는데, 최저임금 인상과 동결을 주장하는 쪽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상황
-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측에서는 물가상승률과 세계적 추세에 따라 지금보다 큰 폭

---

2) 고용주가 지불하는 최저임금은 법정최저임금이 6,479원일 경우 9,156원으로 상승하고 7,530원이면 10,656원 8,350원 12,157원, 9,620원이면 13,614원을 상승하여 실질 최저임금은 이미 10,000원을 넘어 선 상태임

## 의 증가가 필요하다는 입장

- 최근에 물가가 올라 생활 자체가 어렵다는 주장이며 교육비와 각종 생활비가 다 증가한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이 없으면 가계활동이 불가하다는 입장
  -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인상 자체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는데 근로자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소비여력을 증대시켜 경제가 활성화된다는 설명
  - 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의 일환으로서 최저임금을 꾸준히 인상해야 한다는 주장
-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측에서는 코로나19의 여파와 최근의 경기침체, 누적된 최저 임금 고율 인상의 충격 등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을 동결해야 한다는 입장
- 인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최저임금 주요 결정기준인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대비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설명
  - 생계비의 경우 현재 최저임금 수준은 이미 최저임금의 정책적 대상인 비흔 단신 저임금 근로자의 생계비를 넘어선 수준이며, 유사 근로자 임금의 경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최저임금 적정수준의 상한선이라 할 수 있는 중위임금 대비 60%를 초과하였으며 G7 국가들보다 월등히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
- 업종별 차등화는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문제이며 최근에는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주장까지 가세하고 있는 상황
- 일단 2024년 최저임금에서는 업종별 차등화는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음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는 숙박·음식점업 등 일부 업종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30%를 넘었으며 산업별로 평균임금 수준, 최저임금 미만율이 천차만별인 상황에서 단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지불능력이 낮은 산업군에서는 붕괴에 직면할 것이기 때문에 사업체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
  - 요컨대 업종마다 기업의 지급 능력과 생산성 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는 것이 사실인 만큼 한계상황에 직면한 업종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을 구분하여 차등화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
  - 뿐만 아니라 OECD 국가에서 최저임금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 30개국 가운데 차등 적용을 시행하고 있는 나라는 19개국에 이르며, 영국이나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청년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나이나 숙련도에 따라 최저임금을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은 업종뿐만 아니라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고 있다는 주장
  - 우리나라의 경우 업종별 차등화에 더하여 규모별 차등화에 대한 주장도 커지고 있는데 경총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3%에 그친 반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이 29.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규모별 차등화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면 특정 지역 및 업종을 저임금 지역 및 저임금 업종으

로 낙인찍는 낙인효과가 나타날 것을 우려하며 차등화 제도를 반대하는 입장

-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 미만율이 차등 적용에 대한 근거가 될 수 없으며 이를 뒷받침할 만한 통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 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정책이므로 폐기해야 한다는 입장

□ 본 연구에서는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최저임금의 인상과 차등화 적용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최저임금의 인상여부 및 인상수준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인상수준별 경제적 영향을 분석
- 이와 함께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적용될 경우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향후 최저임금 차등화 적용 논의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
-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의 바람직한 개선방향과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



### III. 분석모형

#### 1. 개요

##### 가) 분석모형

□ 본 연구는 업종별·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있음

- CGE(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은 현실 경제를 구성하는 모든 시장(재화 시장, 자본시장, 노동시장) 간의 상호작용과 경제주체들(기업, 가계, 정부)의 경제행위가 가져오는 일반균형(수요=공급)을 방정식 체계로 전환하여 모형경제를 구축
- 모형경제를 기반으로 정책변화 및 경제여건 변화에 대한 모의실험(simulation)을 통해 정책효과를 정량적으로 도출하는 분석기법을 CGE 모형이라 함
-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축한 모형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이 미치는 경제영향을 산업별 노동시장뿐만 아니라 자본시장, 재화시장 국제무역 등 모든 변화를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음

##### 나) 입력데이터

□ 산업구조, 고용구조, 소득계층별 고용 및 소비 행태를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 본 연구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를 활용하였음

-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고시하고 있는 최저임금 미만율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사용하고 있는데 어느 데이터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최저임금 미만율의 차이가 발생
- 2021년의 경우 최저임금 미만율(조사시점 현재 전체 임금근로자 가운데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임금근로자 수 비율(추정치))은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기준으로는 4.4%를 기록하였으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으로는 15.3%를 기록

- 본 연구에서는 공개자료의 이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사용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을 추정
- 한국은행의 2019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사회회계행렬(SAM)을 구축하고 이를 2023년 SAM으로 업데이트 하였음
  - 사회회계행렬(SAM)이란 국민경제의 소득순환(생산, 분배, 지출)과정을 수입과 지출 측면에서 산업연관표와 결합하여 행렬형식으로 표시한 것으로 경제구조 전체에 대한 유기적인 분석을 위해 사용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업종별 미만율은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음
  - 최저임금위원회의 자료를 참조하면 최저임금의 기준임금으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경우 3개월 월평균 임금총액을 사용하고 있으며, 근로시간은 1주 기준 평상근로 시간을 사용하고 있음
  - 공개데이터에서는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경우 평상 근로시간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실체 취업시간을 제공하고 있는 관계로, 본 연구에서는 자료의 이용제약으로 인해 평상 근로시간 대신 실제 취업시간을 사용하여 시간당 임금을 계산(최저임금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고시된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기준의 최저임금 관련 통계와 차이 발생)
  - 또한 2022년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의 임금자료에 2022년 임금상승률을 가정하여 2023년 임금수준을 추정하고 최저임금 관련 데이터 값을 추정하였음
  -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은 최저임금보다 낮은 시급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의미하며 산업별 최저임금 미만율을 사용하여 업종별 최저임금 수준을 설정
- 모형 구성을 위한 가구 단위의 소득계층별 소득 및 지출 평균은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여 추정
  - 한국복지패널조사를 사용하여 가중치를 적용하고 가구 기준 소득 1분 위~소득 10분위)를 추정
  - 모형값 입력을 위해 소득분위에 따른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 및 지출 평균을 산출

#### 다) 분석대상 산업

- 분석을 위한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을 따름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기준에 따라 산업은 농림어업, 광업, 제조업 등 19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석에 사용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분류기준과 소득계층을 매칭하여 산업별, 소득분위별 데이터를 구성
  - 소득계층은 10분위로 나누어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W01)부터 소득수준이 가장 높은 소득 10분위(W10)로 구성됨
  -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산업과 소득 10분위의 소득계층을 매칭하여 각각의 분류에 해당되는 근로자의 데이터 값을 사용하여 분석을 수행

〈표 1〉 분석대상 산업 및 소득계층

| 산업분류 |       |  |                 | 소득계층 |              |
|------|-------|--|-----------------|------|--------------|
| 색인   | 산업대분류 | 업종명  | 산업연관표<br>소분류 기준 | 색인   | 소득분위         |
| S01  | A     | 농림어업   | 001~025         | W01  | 소득하위<br>10%  |
| S02  | B     | 광업   | 026~034         | W02  | 소득하위<br>20%  |
| S03  | C     | 제조업  | 035~273         | W03  | 소득하위<br>30%  |
| S04  | D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274~281         | W04  | 소득하위<br>40%  |
| S05  | E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 282~286         | W05  | 소득하위<br>50%  |
| S06  | F     | 건설업  | 287~301         | W06  | 소득하위<br>60%  |
| S07  | G     | 도매 및 소매업   | 302~303         | W07  | 소득하위<br>70%  |
| S08  | H     | 운수 및 창고업   | 304~317         | W08  | 소득하위<br>80%  |
| S09  | I     | 숙박 및 음식점업  | 318~321         | W09  | 소득하위<br>90%  |
| S10  | J     | 정보통신업  | 322~334         | W10  | 소득하위<br>100% |
| S11  | K     | 금융 및 보험업   | 335~349         |      |              |
| S12  | L     | 부동산업   | 341~344         |      |              |
| S13  | M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345~356         |      |              |
| S14  | N     |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357~359         |      |              |
| S15  | O     |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 360~361         |      |              |
| S16  | P     | 교육서비스업   | 362~364         |      |              |
| S17  | Q     |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 365~370         |      |              |
| S18  | R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371~375         |      |              |
| S19  | S, T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br>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 | 376~384         |      |              |

- 상기의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향후 보고서에서 산업표기는 색인 정의에 따라 S01(농림어업)부터 S19(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과 가구 내 고용활동 및 자가소비 생산활동)로 표기

- 소득표기도 소득 10분위를 기준으로 낮은 분위부터 W01(소득하위 10%)~W10(소득 하위 90% 초과~소득 하위 100%)로 표기
- <표 2>는 산업과 소득분위 기준으로 근로자 수를 나타내는데 샘플에서 소득분위별로 균등하게 10분위로 구분하였기 때문에 각 소득분위별 근로자 수는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산업별로는 산업규모에 따라 근로자수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제조업 분야인 S03에서 근로자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표 3>은 <표 2>의 근로자 수를 전체 근로자에 대한 비중으로 나타낸 표인데, 각 분위별 비중은 10%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산업별 비중에서는 제조업(S03)이 전체에서 19.24%를 차지하고, 그 다음으로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S17), 도매 및 소매업(S07) 등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2. 분석 시나리오

- 본 연구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유무에 따라 시나리오를 크게 시나리오 1(차등적용 無)와 시나리오 2(차등적용 有)로 나눔

- 각 시나리오는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00원, 11,000원, 12,21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부 시나리오로 설정하였음

〈표 4〉 시나리오 구성

| 시나리오                 | 색인     | 내용                |
|----------------------|--------|-------------------|
| 시나리오 1<br>(업종별 차등 無) | SCN1-1 | 2023년 9,620원으로 동결 |
|                      | SCN1-2 | 10,000원으로 인상      |
|                      | SCN1-3 | 11,000원으로 인상      |
|                      | SCN1-4 | 12,210원으로 인상      |
| 시나리오 2<br>(업종별 차등 有) | SCN2-1 | 2023년 9,620원으로 동결 |
|                      | SCN2-2 | 10,000원으로 인상      |
|                      | SCN2-3 | 11,000원으로 인상      |
|                      | SCN2-4 | 12,210원으로 인상      |

- 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하더라도 현재 최저임금 미만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들이 9,620원을 받도록 법을 강화한다면 최저임금 인상효과가 발생

- 도소매업(S07)을 기준으로 설명하면, 〈표 5〉에서 보듯이 도소매업의 9,620원 미만 시급 근로자의 평균 임금은 7,657원에 달하는데 이들이 9,620원을 받는다면 인상률은 25.6%에 달함
- <부록 1>에 수록된 9,620원에 대한 도소매업(S07)의 소득 1분위 계층(W01)의 미만율은 77.3%에 달하기 때문에 도소매업의 소득 1분위계층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19.8%(25.6%×77.3%) 인상된 효과를 갖는다고 가정
-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인상된다고 가정하면, 도소매업의 9,620원 미만 시급 근로자의 평균 임금(7,657원)에서 10,000원으로 30.6% 인상되고 10,000원에 대한 소득 1분위계층 미만율(81.7%)을 적용하면 도소매업의 소득 1분위 계층의 임금인상률은 25%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이와 같이 추정한 시나리오별 업종별·소득계층별 인상률은 〈표 7〉~〈표 10〉에서 찾아 볼 수 있음

〈표 5〉 최저임금 9,620원 미만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부터의 인상률

(단위: %, 원)

|       | 9,620원 | 10,000원 | 11,000원 | 12,210원 | 9,620원 미만<br>근로자의<br>평균임금(원) |
|-------|--------|---------|---------|---------|------------------------------|
| S01   | 37.9   | 43.4    | 57.7    | 75.1    | 6,975                        |
| S02   | 0.0    | 0.0     | 0.0     | 0.0     | 9,620                        |
| S03   | 24.0   | 28.9    | 41.8    | 57.4    | 7,755                        |
| S04   | 0.0    | 0.0     | 0.0     | 0.0     | 9,620                        |
| S05   | 30.4   | 35.5    | 49.1    | 65.5    | 7,378                        |
| S06   | 30.4   | 35.5    | 49.1    | 65.5    | 7,378                        |
| S07   | 25.6   | 30.6    | 43.7    | 59.5    | 7,657                        |
| S08   | 28.6   | 33.7    | 47.1    | 63.3    | 7,479                        |
| S09   | 20.8   | 25.6    | 38.1    | 53.3    | 7,964                        |
| S10   | 21.9   | 26.7    | 39.4    | 54.8    | 7,890                        |
| S11   | 32.3   | 37.5    | 51.3    | 67.9    | 7,271                        |
| S12   | 29.6   | 34.8    | 48.2    | 64.5    | 7,420                        |
| S13   | 19.0   | 23.7    | 36.1    | 51.1    | 8,081                        |
| S14   | 21.6   | 26.4    | 39.0    | 54.3    | 7,911                        |
| S15   | 35.5   | 40.9    | 55.0    | 72.0    | 7,099                        |
| S16   | 24.9   | 29.8    | 42.8    | 58.5    | 7,702                        |
| S17   | 30.5   | 35.6    | 49.2    | 65.6    | 7,373                        |
| S18   | 24.1   | 29.0    | 41.9    | 57.5    | 7,753                        |
| S19   | 31.4   | 36.6    | 50.2    | 66.8    | 7,322                        |
| 전체 평균 | 26.5   | 31.5    | 44.6    | 60.5    | 7,606                        |

□ <표 6>은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이 적용되는 시나리오 2의 업종별 최저임금을 시나리오별로 보여주고 있음

- 최저임금 미만율은 업종별(산업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최저임금 미만율을 이용
- 당해연도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금액 기준으로 전체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을 추정하고, 전체 산업기준 최저임금 미만율보다 높은 산업의 경우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보다 높지 않은 수준을 산출하는 임금수준을 결정하여 업종별 차등화에 따른 업종별 최저임금으로 선정하였음

〈표 6〉 업종별 차등 최저임금

(단위: 원)

|     | 9,620원 | 10,000원 | 11,000원 | 12,210원 |
|-----|--------|---------|---------|---------|
| S01 | 5,920  | 6,630   | 7,400   | 8,880   |
| S02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03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04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05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06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07 | 8,880  | 9,350   | 9,870   | 11,100  |
| S08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09 | 7,890  | 7,930   | 8,610   | 8,950   |
| S10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11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12 | 8,250  | 8,610   | 9,210   | 10,530  |
| S13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14 | 9,110  | 9,470   | 9,950   | 11,000  |
| S15 | 9,470  | 10,000  | 11,000  | 12,210  |
| S16 | 9,620  | 10,000  | 11,000  | 12,210  |
| S17 | 7,890  | 8,680   | 9,470   | 10,660  |
| S18 | 8,880  | 8,940   | 9,520   | 10,660  |
| S19 | 8,290  | 8,700   | 9,470   | 10,330  |

□ 시나리오 2의 세부시나리오의 업종별·소득계층별 최저임금 인상률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음

- 업종별 차등이 없는 시나리오 1과 달리 시나리오 2에서는 9,620원 미만 근로자의 시급에서의 인상률과 미만률에서 차이가 있어 실제 인상률이 상이하게 나타남
- 도소매업(S07)을 중심으로 설명하면, 9,620원을 동결할 경우 도소매업의 차등 최저임금은 <표 6>에서 보듯이 8,880원이기 때문에 도소매업의 9,620원 미만의 평균 임금 7,657원에서 16% 증가함
- 최저임금이 업종별로 차등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미만율도 차이가 있는데 도소매업 종의 소득 1분위의 미만율이 시나리오 1의 SCN1-1에서 77.3%였으나 시나리오 2의 SCN2-1에서는 53.3%로 하락함(<부록 2> 참조)
- 따라서 SCN2-1에서 도소매업의 소득 1분위 계층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8.5%(16% × 53.3%)로 균등적용 할 때의 인상률 19.8%에 비해 인상률이 11.3%p나 하락함
- 이와 같이 추정된 업종별·소득계층별 인상률은 <표 11>~<표 14>에서 찾아 볼 수 있음
  - 차등적용하고 법정최저임금을 9,620원으로 동결할 경우 농림어업과 음식숙박업의 소득 1분위 계층 최저임금은 각각 현재보다 5.5%와 0.2% 하락하는 것으로 추정됨
  - 최저임금이 11,000원 이상으로 인상하게 되면 농림어업의 소득 1분위 계층 최저임금도 현재에서 3.9%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남



















## IV. 분석결과

### 1. GDP와 소비자물가지수의 변화

- 상기의 입력데이터를 바탕으로 CGE 모형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 수준이 높을수록 GDP와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이유는 최저임금 미만의 근로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되는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사료
  - 내년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2,210원으로 인상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증가할 것으로 전망
-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
  - 최저임금 차등화 수준은 최저임금 단일 인상시 전체 산업에서 나타나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추정한 후 해당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평균보다 높은 산업의 경우 해당 산업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보다 같거나 이보다 낮아지는 최저임금 수준으로 설정
  - 최저임금 차등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 인상을 12,210원으로 가정하고 최저임금 차등화를 시행하는 경우 GDP는 0.73%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는 경우보다 GDP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최저임금을 12,210원으로 인상하면 GDP는 1.33%

감소하고 소비자물자지수는 6.84%p 증가

- 현재와 같은 수준의 최저임금을 유지하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 GDP는 약 0.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자지수는 약 0.24%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을 경우 GDP는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자지수는 약 0.63%p 증가
- 최저임금이 10,000원으로 증가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하고 소비자물자지수는 0.40%p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5〉 시나리오별 GDP와 소비자물자지수 변화

(단위: %, %p)

|                            |                     | GDP(%) | 소비자물자지수(%p) |
|----------------------------|---------------------|--------|-------------|
| 시나리오 1<br>(업종별 차등 無)       | SCN1-1<br>(9,620원)  | -0.12  | 0.63        |
|                            | SCN1-2<br>(10,000원) | -0.19  | 1.05        |
|                            | SCN1-3<br>(11,000원) | -0.49  | 2.58        |
|                            | SCN1-4<br>(12,210원) | -1.33  | 6.84        |
| 시나리오 2<br>(업종별 차등 有)       | SCN2-1<br>(9,620원)  | -0.06  | 0.24        |
|                            | SCN2-2<br>(10,000원) | -0.09  | 0.40        |
|                            | SCN2-3<br>(10,000원) | -0.23  | 0.97        |
|                            | SCN2-4<br>(12,210원) | -0.73  | 3.10        |
| 시나리오 2 –<br>시나리오 1<br>(%p) | (SCN2-1)–(SCN1-1)   | 0.06   | -0.39       |
|                            | (SCN2-2)–(SCN1-2)   | 0.10   | -0.66       |
|                            | (SCN2-3)–(SCN1-3)   | 0.26   | -1.61       |
|                            | (SCN2-4)–(SCN1-4)   | 0.60   | -3.73       |

## 2. 소득분배 변화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 결과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에서의 피해가 더 크게 나타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이 올해 수준(9,620원)을 유지하는 경우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1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상승하면 소득 1분위의 근로소득은 약 27.8%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으로 인한 근로소득의 감소율은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더 크게 나타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저소득층에서의 피해가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드러남
    - 소득분위 10분위(최상위층)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근로소득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근로소득 변화율이 -0.1%~0.0%를 기록)
  - 최저임금 차등화를 같이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폭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대되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
  -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수준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 소득재분배의 대표적 지표인 지니계수와 5분위 배율을 살펴보면 최저임금 인상으로 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남(<표 16> 참조)
  - 최저임금의 인상폭이 커지면 커질수록 소득재분배는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다만 업종별 차등을 두고 시행하면 최저임금이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됨

- <표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업종별 차등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을 현 상태인 9,620으로 동결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42.502를 나타냈으며, 12,21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지니계수가 43.632로 상승하면서 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5분위 배율도 업종별 차등이 없을 경우 최저임금을 현 상태인 9,620으로 동결하는 경우 12.629를 나타냈으나, 12,210원으로 인상되는 경우에는 13.257로 증가하면서 소득재분배가 더욱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 다만 업종별로 최저임금을 차등화하는 경우 소득재분배의 부정적 효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최저임금을 12,21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화하는 경우 지니계수는 43.058을, 5분위 배율은 12.926을 기록하여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가 없는 경우보다 감소하여 소득재분배의 부정적 영향이 완화되는 것으로 분석됨

〈표 16〉 시나리오별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 기준<br>시나리오 | SCN1-1 | SCN1-2 | SCN1-3 | SCN1-4 | 시나리오 2(업종별 차등 有) |        |        |        |
|------------|--------|--------|--------|--------|------------------|--------|--------|--------|
|            |        |        |        |        | SCN2-1           | SCN2-2 | SCN2-3 | SCN2-4 |
| 지니<br>계수   | 42.305 | 42.502 | 42.599 | 42.924 | 43.632           | 42.39  | 42.44  | 42.598 |
| 5분위<br>배율  | 12.364 | 12.629 | 12.704 | 12.926 | 13.257           | 12.48  | 12.538 | 12.666 |

〈표 17〉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

|     | 시나리오 1(업종별 차등 無) |        |        |        | 시나리오 2(업종별 차등 有) |        |        |        |
|-----|------------------|--------|--------|--------|------------------|--------|--------|--------|
|     | SCN1-1           | SCN1-2 | SCN1-3 | SCN1-4 | SCN2-1           | SCN2-2 | SCN2-3 | SCN2-4 |
| W01 | -10.7            | -12.9  | -19.9  | -27.8  | -4.8             | -7.2   | -11.7  | -18.6  |
| W02 | -6.6             | -8.8   | -14.5  | -23.6  | -2.9             | -4.3   | -7.6   | -14.9  |
| W03 | -2.9             | -4.4   | -9.6   | -20.6  | -1.2             | -1.9   | -4.7   | -12.0  |
| W04 | -1.5             | -2.6   | -6.1   | -14.9  | -0.6             | -1.1   | -2.7   | -8.4   |
| W05 | -0.8             | -1.4   | -3.7   | -9.3   | -0.3             | -0.5   | -1.5   | -4.9   |
| W06 | -0.4             | -0.7   | -2.3   | -6.6   | -0.2             | -0.3   | -0.8   | -3.1   |
| W07 | -0.1             | -0.4   | -1.8   | -4.7   | 0.0              | -0.1   | -0.6   | -2.2   |
| W08 | 0.0              | -0.1   | -0.2   | -2.1   | 0.0              | 0.0    | -0.1   | -0.6   |
| W09 | 0.0              | -0.1   | -0.1   | -0.6   | 0.0              | 0.0    | -0.1   | -0.2   |
| W10 | 0.0              | 0.0    | 0.0    | -0.1   | 0.0              | 0.0    | 0.0    | 0.0    |

〈표 18〉 소득계층별 근로소득 변화

(단위: 조 원)

|     | 기준<br>시나리오 하의<br>근로소득 | 시나리오 1(업종별 차등 無) |        |        |        | 시나리오 2(업종별 차등 有) |        |        |        |
|-----|-----------------------|------------------|--------|--------|--------|------------------|--------|--------|--------|
|     |                       | SCN1-1           | SCN1-2 | SCN1-3 | SCN1-4 | SCN2-1           | SCN2-2 | SCN2-3 | SCN2-4 |
| W01 | 6.6                   | -0.71            | -0.86  | -1.32  | -1.84  | -0.32            | -0.48  | -0.78  | -1.23  |
| W02 | 14.4                  | -0.95            | -1.26  | -2.09  | -3.39  | -0.42            | -0.62  | -1.09  | -2.14  |
| W03 | 31.5                  | -0.92            | -1.39  | -3.02  | -6.48  | -0.36            | -0.59  | -1.47  | -3.78  |
| W04 | 64.9                  | -0.96            | -1.68  | -3.96  | -9.70  | -0.42            | -0.72  | -1.78  | -5.45  |
| W05 | 97.9                  | -0.74            | -1.41  | -3.59  | -9.15  | -0.31            | -0.53  | -1.48  | -4.81  |
| W06 | 121.3                 | -0.49            | -0.83  | -2.76  | -7.95  | -0.20            | -0.33  | -1.01  | -3.74  |
| W07 | 143.8                 | -0.15            | -0.58  | -2.61  | -6.79  | -0.07            | -0.21  | -0.80  | -3.22  |
| W08 | 177.6                 | -0.07            | -0.13  | -0.40  | -3.79  | -0.02            | -0.04  | -0.12  | -1.13  |
| W09 | 217.2                 | -0.07            | -0.12  | -0.31  | -1.19  | -0.03            | -0.05  | -0.12  | -0.48  |
| W10 | 351.3                 | -0.02            | -0.04  | -0.11  | -0.39  | -0.01            | -0.01  | -0.04  | -0.13  |



## V. 결론 및 시사점

- 본 연구에서는 업종별·소득계층별로 세분화된 완전 동태적 연산 가능한 일반균형(CGE, Computable General Equilibrium) 모형을 이용하여 최저임금의 인상 수준 및 업종별 차등 적용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음
  - 최저임금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하기 위해 산업구조, 고용구조, 소득계층별 고용 및 소비행태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한국은행의 「산업연관표」,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한국복지패널조사」등의 가장 최근 자료를 사용
  - 분석대상 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부분류를 사용했으며, 소득계층을 10분위로 구분하여 시나리오별 분석 수행
  - 분석을 위한 시나리오는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 적용 유무에 따라 크게 시나리오 1(차등적용 無)과 시나리오 2(차등적용 有)로 2개로 나누고, 각 시나리오는 2024년 최저임금을 2023년 9,620원으로 동결하거나 10,000원, 11,000원, 12,21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세부 시나리오로 설정
- 분석결과 최저임금 인상폭이 클수록 국민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분석됨
  - 2024년도 최저임금을 올해 수준인 9,620원으로 동결해도 GDP가 0.12%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63%p 증가할 것으로 추정
  - 최저임금을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해도 GDP가 감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최저임금 미만 근로자들의 임금이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될 경우 발생하는 영향으로 사료됨
  - 내년도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올리는 경우에는 GDP가 0.19% 감소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1.05%p 상승할 것으로 추정되었으며, 12,210원으로 인상할 경우 GDP가 1.33% 줄어들고, 소비자물가지수는 6.84%p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어 최저임금 인상폭이 커질수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도 커지는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을 인상하더라도 이를 업종별로 차등화하면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약 50% 감소할 것으로 추정

-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수준은 특정 최저임금 수준에서 전체 산업의 최저임금 미만율(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 근로자의 비율)을 추정한 후, 전체 평균보다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체 평균과 같거나 낮아지는 수준으로 최저임금을 설정
- 최저임금이 12,210원으로 인상되면 GDP는 0.73% 감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1.33%↓)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3.10%p 증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6.84%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GDP의 부정적 영향은 약 45%, 소비자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은 약 55% 감소
- 현재와 같은 최저임금 수준을 유지하면서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GDP는 약 0.06% 감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0.12%↓)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비자물가지수는 약 0.24%p 증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0.63%p↑)
- 최저임금을 10,00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도 GDP는 0.09% 감소(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0.19%↓)하고 소비자물가지수는 0.40%p 증가(최저임금 업종별 차등화가 없을 경우에는 1.05%p↑)하는 것으로 나타나 최저임금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보다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

□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저임근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소득분배 개선에 이바지한다는 취지로 시행되었지만 실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피해는 저소득층에서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됨

-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득분배 변화를 분석한 결과 각 시나리오별 분석에서 소득수준이 가장 낮은 소득 1분위에서 근로소득 감소율이 가장 크게 나타나나고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감소율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남
  - 소득분위 10분위(최상위층)에서는 최저임금이 인상되어도 근로소득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됨(근로소득 변화율이 -0.1%~0.0%를 기록)
- 최저임금 차등화를 같이 적용하면 근로소득 감소폭은 이전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여전히 저소득층에서 감소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 최저임금으로 보호하려는 저임금 근로자가 주로 피해를 입는 이유는 저임금 근로자가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일자리를 잃게

될 확률이 증대되어 오히려 소득이 줄어들기 때문

- 최저임금 인상의 부정적 영향이 주로 저임금 근로자에게 크게 나타나면서 전반적인 소득재분배 수준도 악화되는 결과를 초래

□ 최저임금 인상은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신중히 접근할 필요

- 소득계층 간 노동대체효과로 단순 근로자 대체 및 소득재분배 악화, 차상위 계층의 임금상승 압력에 따른 임금 인플레이션, 가격을 통한 소비자로의 전가효과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

□ 최저임금 인상은 자제할 필요가 있으며 향후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도입하여 최저임금 인상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

- 최저임금을 동결해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내년도 최저임금은 동결하고 경제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필요
- 2024년에는 일단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화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났지만, 최저임금 인상의 부작용을 줄이고 저소득층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2025년부터는 최저임금의 차등화를 적용할 필요

## 참 고 문 헌

---

### [국내문헌]

---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2019.
- 유경준, “최저임금의 쟁점 논의와 정책방향”, KDI Focus 제32호, KDI, 2013.
- 유진성,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KERI Insight, 20-07, 한국경제연구원, 2020.
- 윤희숙, “최저임금과 사회안전망: 빈곤정책수단으로서의 한계”, KDI Focus 제71호, KDI, 2016.
- 조경엽, “최저임금 차등화의 경제적 효과”, KERI Insight, 19-07, 한국경제연구원, 2019.
- \_\_\_\_\_,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경제적 영향”, KERI Brief, 18-07, 한국경제연구원, 2018(a).
- \_\_\_\_\_,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소득재분배에 미치는 영향”, KERI Brief, 18-10, 한국경제연구원, 2018(b).

### [해외문헌]

---

- Freeman R., “The Minimum Wage as a Redistributive Tool”, The Economic Journal, 106, 1996.



















[www.keri.org](http://www.keri.org)

(0732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24 FKI TOWER 46층  
전화 : (대표)3771-0001 팩스 : 785-0270



값 5,000원